

##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9
----------	------

제출년월일 : 2003.5.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전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라.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안 제12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폐기물관리법(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6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25,000천원

- 공동(연립)주택지역 전용수거함 추가설치(500개×50천원=25,000천원)

####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4. 3 ~ 4. 22(20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

##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범 제63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는 지역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원화시설 대행업체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금액은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화 관련된 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용 및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소관 실·과		청소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청소과장 김상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활용담당 박양복
	담당자 성명·전화	장인찬 (행정 3539)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li> </ul>

&lt;별표 2&gt;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 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5	10	20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20	5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10	20	30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관련)			

## &lt; 별지 제1호서식 &gt;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sup>2</sup>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기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①							

&lt; 별지 제2호 서식 &gt;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제7조관련)**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방법	자 처리량	처리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lt; 작성요령 &gt;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관련)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2$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2$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2$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